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30일, 김석기의원 등 19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석기의원)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요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연혁 및 회원국 현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하여,¹⁾ 1993년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됨.

APEC은 매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역내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역투자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에 기여함. 또한 역내 기업활동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업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을 추진함.

현재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전 세계 GDP의 약 62.3%, 교역량의 약

1) 창설멤버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50.7%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관련 지역협력체임.

<APEC 회원국 현황>

총 21개국	
동아시아(12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3개국), 기타(1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국가(State) 단위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

- 중국, 대만, 홍콩은 개별 참석 경제 주체
- 정상회의의 영문명칭도 Summit이 아닌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으로 불리고 APEC 회의에서는 국가 미제양

1993년 미국에서 제1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11월 회원 각국을 돌면서 열리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APEC 각료회의를, 2005년 부산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역대 APEC 개최국 현황>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1989	호주(각료회의)	2009	싱가포르
1990	싱가포르(각료회의)	2010	일본
1991	한국(각료회의)	2011	미국
1992	태국(각료회의)	2012	러시아
1993	미국	2013	인도네시아
1994	인도네시아	2014	중국
1995	일본	2015	필리핀
1996	필리핀	2016	페루
1997	캐나다	2017	베트남
1998	말레이시아	2018	파푸아뉴기니
1999	뉴질랜드	2019	칠레
2000	브루나이	2020	말레이시아
2001	중국	2021	뉴질랜드
2002	멕시코	2022	태국
2003	태국	2023	미국

2004	칠레	2024	페루
2005	한국	2025	한국
2006	베트남	2026	(미정)
2007	호주	2027	베트남
2008	페루		

2) 우리나라 APEC 정상회의 개최 사례

200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의 일정 동안 부산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미·중·러·일 등 21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각료 등 정부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약 2만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가하였음.

구분	세부내용
일정	2005. 11. 12(토) ~ 19(토) ※정상회의: 2005. 11. 18(금) ~ 19(토)
장소	부산 BEXCO(제1차 정상회의),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제2차 정상회의)
주제	Toward One Community :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소요예산	총 681억원(기획단 110억원, 부산시 521억원, 제주도 50억원)
참가 규모	- 미·중·러·일 등 아태지역 21개국 정상 참석 - 각료 등 정부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약 2만명 국내외 인사 참가
성과	(대외) APEC의 주요 당면과제에 가시적인 진전 달성, 우리 외교적 위상 제고, 우리 경제·기업·제품의 홍보 효과,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대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 제시, 세계적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IT 한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의 외교역량 강화, 도시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국민 자부심 고취

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요

1) 개최도시 선정 경과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 활동의 계기로 2005년 부산에서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

2024년 3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²⁾ 산하에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서를 접수함. 5월 7일 제2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경주, 인천, 제주를 후보 도시로 의결한 이후 후보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20일 제4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선정 건의안을 심의·채택함.

2)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요

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 :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2)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및 관련 회의들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 관련 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요>

- 회의명 :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 일자(잠정) : 2025년 하반기
-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 주제(안) :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 : Connect, Innovate, Prosper)
- 참석규모 : 초청국 포함 약 23~24개국 정상 참석 예상 및 정부대표단·기업인·기자 단 등 정상회의 전체 기간 중 총 2만여 명 참석 예상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외교부의 예상 소요예산은 APEC 준비기획단³⁾ 578억원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약 430억원이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여타부처의 소요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3) 주요시설 및 세부 운영계획

정상회의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의 가용 연면적 11,000m² 내에 APEC 정상회의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미디어센터는 별도 야외 건물 설치가 필요하고, 만찬장이나 부대행사장은 2024년 9월말 기준 후보지를 검토 중임.

3)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4) 준비기획단 예산구성(총 578억원)－ 기획단 운영비(43억원), 정상회의 준비(275억원), 제반회의 준비(211억원), 홍보(49억원)－ 외교부 제출자료(2024. 9. 20.자)

숙소는 경주 보문단지(정상회의장 3km)내 4,463객실(103개소)이 사용 가능하며, 10km내로 확대 시 총 13,265객실(1,333개소)이 사용 가능함. 외교부에 따르면 숙소 사정을 감안하여 정상 참석 여부, 국가별 대표단 규모 및 선호 숙소 등을 고려하여 주최국이 배정하고, 최대한 경주시내에 배정하되 필요시에는 인근 도시로 분산하여 수용할 계획이라고 함. 참가국 정상을 위해서는 11개 주요 숙소에 24개 실을 조성할 예정으로 외교부, 경주, 경상북도, 호텔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PRS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임.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APEC 준비기획단은 기획, 총괄, 의전, 홍보, 주요 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현장 상황 및 자체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다. 제정안의 조문체계

제정안은 2025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숙박·교통시설·관광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제정안은 총 1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한시법이며,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준비 행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개요>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조	정상회의 실무지원단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제8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9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	기념주화 발행
제11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2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제14조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제15조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제1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8조	벌칙
제19조	과태료

라 법 제정 필요성 검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은 2025년 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20년 만에 개최하는 정상회의로 초청국을 포함하여 약 23~2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됨. APEC 정상회의가 일반적인 국제회의와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관련 지역 협력체로서 경제적인 기대 성과는 물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자단을 포함한 2만여명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경주 인근 지역 문화 체험 및 관광지 홍보 등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는 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의 개최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처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의 중요성,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출의 투명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동 법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한시법이며 정상회의 개최까지의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5)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준비기획단 운영비 43억원, 정상회의 준비 275억원, 제반회의 준비 211억원, 홍보비 36억원 등 총 5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43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마. 개별 법 조항 검토

1) 법 제명

제정안은 법 제명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으로 개최 년도와 경주를 명시하고 있음. 2025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의장국 수임활동의 계기로 개최되는 것이므로 개최도시명 대신 국가명을 사용하여 ‘2025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적절하다는 외교부의 의견도 있으나, 법 제명에 따라 국제회의의 정식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주로 명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임. 참고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된 다른 법에서도 법 제명에 개최지를 명시하고 있음.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정안 제1조는 목적조항이고, 제2조는 정상회의 관련시설에 대하여 정의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상회의 관련시설”이라 함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정안 제1조는 제정법의 목적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제정안의 지원범위를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의 장국 수임 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회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제2조는 정상회의 관련시설을 정상회의에 사용되는 회의장시설,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숙박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제정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정으로, 진입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된 현행법과의 관계를 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주로 정책 분야별 주요법·기본법이나 각종 지원법·촉진법 등에서 해당 분야의 국가 등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제정안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4) 준비위원회 등 조직 관련 규정(안 제5조~제6조, 제12조, 제17조)

제정안 제5조와 제6조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 파견요청을, 안 제17조에서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의 준비와 준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9. 산업통산자원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3. 경주시장

14. 경상북도지사

15.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회의 실무지원단) ①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준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외교부차관이 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지원

2.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

⑥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로 정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행정기관과 정상회의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준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준비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준비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준비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정안은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정상회의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지 않고, 이미 2024. 9. 20. 개정 시행된 대통령 훈령 제470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준비행위를 승계하여 운영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임.⁶⁾

다만,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뿐 아니라 관련 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나 제정안은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고, 제정안의 준비위원회 및 실무지원단과 그 구성 및 업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⁷⁾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분장 및 수행의 혼

6) 외교부에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통령 훈령 제459호로 2023.8.17. 제정·시행되었다가, 2024년 9.20.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7)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및 관련 회의들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 관련 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경호처장·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질병관리청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란 등의 우려로 규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준비위원회는 그 성격상 APEC 정상회의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준비기획단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요청의 주체이자 사업시행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12조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을 하는 경우 준비위원회가 제정안과 같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불필요함.⁸⁾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8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부장관으로,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단의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관리회의 의장 : 고위관리회의의 주제,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 ⑥ 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⑦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8)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검토의견(2024. 9. 26.)

5) 국가 등의 지원 및 기부금품 접수 등(안 제7조~제9조)

제정안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편의제공 요청 근거를, 안 제8조는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규정하고, 제정안 제9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

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기능은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의 주체를 사업시행 주체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외교부에서는 실제 사업 주체인 준비기획단, 정상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명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제정안 제8조는 소요 예산 조달을 위한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안 제7조와 마찬가지로 그 주체는 준비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제정안 제9조의 경우에도 사용 등 주체를 사업시행 주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유재산 특례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⁹⁾이 병행되어야 함.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제한의 특례)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6)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의 발행 및 자료의 제공요청(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정안 제10조와 제11조는 기념주화 및 우표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는 준비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해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상회의의 홍보를 위한 기념주화나 기념우표의 발행 및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제공 요청 등 대규모 행사 준비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임. 다만 기념주화 등 발행 주체 역시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7)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안 제14조)

제정안 제14조는 경주시장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경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상회의에 약 23~2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회의 전체 기간 중 총 2만 여명이 경주에 집중될 것을 예상하면 교통 및 숙박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임.

제정안은 경주시장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경상북도도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상회의 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한편 외교부는 특별교통·숙박대책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바, 예산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정안 제15조는 정상회의 회장 등의 사용을 위한 승인을, 안 제16조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회장 등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정상회의 회장 등의 사용)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회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회장 등의 사용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은 대회나 행사 준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그 주체는 준비위원회가 아닌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한편 제정안 제16조의 정상회의 회장 등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과태료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유효 기간(부칙 제2조)

제정안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임. 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에도 후속조치 등 준비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외교부에 따르면 제정안의 유효기간을 정상회의 종료 후 6개월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건)

동 법의 지원범위를 정상회의 뿐 아니라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하고,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주체를 준비기획단과 정상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2.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동 법의 지원범위를 정상회의 뿐 아니라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하고,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미 설치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과 내용을 일치시키며,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를 준비기획단과 정상회의 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수정주요내용

가. 이 법의 지원 범위를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함(안 제2조 등).

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 훈령 제470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에 맞추어 업무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다. 정상회의 등 준비와 관련된 사업 수행 주체를 심의기구인 준비위원회가 아닌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안에 대한 수정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를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중 “정상회의”를 “정상회의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정상회의가”를 “정상회의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상회의”를 “정상회의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대통령경호처장 · 국무조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질병관리청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견기업연합회 ·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전단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정상회의”를 각각 “정상회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상회

의”를 각각 “정상회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상회의”를 각각 “정상회의등”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10조 중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을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로 한다.

안 제11조 중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을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준비위원회는”을 “준비기획단은”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경주시장”을 각각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안 제15조 본문 중 “준비위원회가”를 “준비기획단”으로,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6조 중 “이 법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으로 한다.

안 제17조 중 “준비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으로 한다.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 중 “제16조”을 “제15조 또는 제16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상회의 관련시설”이라 함은 2025년 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u>정상회의(이하 “정상 회의”라 한다)</u> 에 사용되는 회 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 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 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정상회의, 고위관리회 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이하 “정상회의등”이 라 한다)----- ----- -----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u>정상회의</u> 관련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 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정상회의등</u>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정상회의가</u>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 <u>정상회의등이</u> ----- -----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 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회의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의 준비와 준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를

-----.

② -----정상회의등-----

-----.

제5조(정상회의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의 개최에 관한 대
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
행

7.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
집 등 지원

8. 정상회의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준비위원회의 위
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

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

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

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

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

<u>9. 산업통산자원부장관</u>	<u>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u>
<u>10. 국토교통부장관</u>	<u>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u>
<u>11. 해양수산부장관</u>	<u>관 · 대통령경호처장 · 국무조</u>
<u>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u>	<u>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u>
<u>13. 경주시장</u>	<u>· 질병관리청장 · 방송통신위</u>
<u>14. 경상북도지사</u>	<u>원회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u>
<u>15.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경험</u>	<u>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u>
<u>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u>	<u>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u>
<u>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u>	<u>위원장</u>
<u>사람</u>	<u>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u>
	<u>자치단체의 장</u>
	<u>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u>
	<u>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u>
	<u>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u>
	<u>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u>
	<u>앙회 및 「민법」 제32조에</u>
	<u>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u>
	<u>·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견기</u>
	<u>업연합회 · 한국무역협회의</u>
	<u>회장</u>
	<u>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u>
	<u>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u>
	<u>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u>
	<u>및 민간 전문가</u>
<u>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u>	<u>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u>
<u>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회의 실무지원단) ①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준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외교부차관이 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지원
2.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무

⑤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

⑥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

-----.

② -----
-----.

1. 정상회의등-----
2. 정상회의등-----
3. 정상회의등-----
4. -----정상회의등-----

③ -----
정상회의등-----

-정상회의등-----
-----.

④ -----
-----정상회의등-----
-----정상회의등-----
-----.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국유·공유재산을 「국유재
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
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
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
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② (원안과 같음)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

② -----

준비기획단, 정상
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행정기관과 정상회의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
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
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준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
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
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
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준비위원회는 파견된 공무
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
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
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
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
기획단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경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
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정상회의 회장 등의 사용)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회장 또
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
의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

-----.

② (원안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
단체장-----

-----.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
단체장-----

-----.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
단체장-----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
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상회의 회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정상회

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u>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u> <u>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u> <u>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u> <u>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u> <u>「상표법」 및 「디자인보호</u> <u>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u> <u>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u>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u> <u>제></u>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u>이</u> <u>법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아닌</u> <u>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u>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 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u>준</u> <u>비기획단</u>----- ----- ----- -----.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 무원의제) <u>준비위원회의 임직</u> <u>원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u> <u>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준</u> <u>비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u> <u>「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u> <u>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u> <u>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u> <u>다.</u>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 무원의제) <u>제12조에 따라</u>----- -----<u>준</u> <u>비기획단</u>----- ----- -----.
제18조(벌칙) <u>제15조를 위반한 자</u> <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u>	<u><삭 제></u>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19조(과태료)</u> ① <u>제16조</u>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부칙 <u>제2조(유효기간)</u> 이 법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 <u>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u> 대 <u>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설치된 <u>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u>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u>제18조(과태료)</u> ① <u>제15조 또는 제16조</u>----- -----. ② (원안과 같음) 부칙 <u>제2조(유효기간)</u> -----<u>2026년 6월 30일</u>----- -. <u><삭 제></u>
--	---

법률 제 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

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관 · 중소기업부장관 · 대통령경호처장 · 국무조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질병관리청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 · 장비 · 시설 등의 확보

· 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